「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22.7.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등 금리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규정 변경 내용
□ 은행별 대출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항목(저축성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
□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내부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시 (이하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디 금리차도 함께 공시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관련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팩스·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 ※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2년 10월 24일(월요일)** (20일간)
-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 □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수석조사역 박재민 (전화: 02-3145-8031 팩스: 02-3145-8057, e-mail : parkjm@fss.or.kr)
- □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조사역 손현정 (전화: 02-3145-8033 팩스: 02-3145-8057, e-mail : hjsohn@fss.or.kr)
- ※ (붙임)「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본문 및 부칙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
	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
	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부 칙<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제123호>
	신설 내용은 2022년 00월 기준 공시
	부터 적용한다.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3>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장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12. (공시대상)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9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제70조의6에 따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국내은행(수출입 은행을 제외한다, 이하 '공시대상 은행')을 공시대상으로 하며, 제70조의6에 의한 비교공시는 (붙임4)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공시방법) ① 공시대상 은행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공시자료를 매월 20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 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서식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③ 공시대상 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붙임2)	(붙임2)

항목	공시주기	내 용
1. 가계대	개출금리	
(생략)	(생략)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 <u>CB사</u>
		개인신용평점,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주기	내 용
개출금리	
(현행과	CB사 개인신용평점별
같음)	<u>대출금리,,</u>
	, <u>CB</u> 사 개인신용
	평점 평균, 예대금리차,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붙임4)
	항목 공시주기 내 용
	<u>평균대출금리</u> <u>월</u> <u>각 항목별 금리,</u>
	<u>기업대출금리</u> <u>금리차</u> 가계대출금리
	정책서민금융 ⁾⁾ 제외
	<u>가계대출금리</u>
	<u>저축성 수신금리</u>
	<u>가계 예대금리차³⁾</u>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
	1)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보증료를 은행이 분납 후취하는 금융상품 2) 평균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3) 가계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4)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책서식 제120호>

현 행 개 정 안

Ⅱ. 대출 가산금리

1. 가계대출금리 공시사항

작성	! 구분	71 71 0	비
대	소	작성 내용	고
	(/	생략)	
분할	대출금리	신용등급별로	
전월 상환방식	기준금리	기중평균 대출금리,	
주택 	가산금리	기준금리, 기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및	
[[[[12]]] [12] [가김조성리	CBY-	
10년상	<u>(B사</u> 개만난용평점	<u>개인신용평점을</u> <u>각각 입력</u>	
	대출금리	신 용등급 별로	
일시	기준금리	기중평균 대출금리,	
상환방식	가산금리	기준금리, 기산금리, 가 감조정금리 및	
주택 당보대출	가김조성리	CBA-	
L IIE	<u> (B사</u> <u>개인용평점</u>	<u>개인신용평점을</u> <u>각각 입력</u>	생
	대출금리	신용등급별로	략
الدونا	기준금리	기중평균 대출금리,	
일반 신용	가산금리	기준금리, 기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및	
대출	가김조성리	CBY-	
	<u>(B사</u> 개인용평점	<u>개인신용평점을</u> <u>각각 입력</u>	
	대출금리	신용등급별로	
신용	기준금리	기중평균 대출금리,	
한도 대출 (마나스	가산금리	기준금리, 기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및	
	가김조성금리	<u>CB사</u>	
净	<u> (B사</u> 개만년8명점	<u>개인신용평점을</u> <u>각각 입력</u>	
(생략)			

Ⅱ. 대출 가산금리

1. 가계대출금리 공시사항

작성	l 구분	71 x1 - 11 △	비	
대	소	작성 내용	고	
(현행과 같음)				
분할	대출금리	<u>CB사 개인신용평점별</u>		
_{만 르} 상환방식	기준금리			
주택 당보대출	가산금리	 예대금리치를 각각		
(学記) 10.おみ	가감정금기	입력하고, CB사 개인신용평점 평균,		
10순상	예대금리차	대한전공행점 평균, CB회사명을 입력		
	대출금리	<u>CB</u> 사 개인신용평점별		
일시	기준금리	,,		
상환방식 주택	기산금리	예대금리치를 각각		
담배출	가급조금리	입력하고, CB사 개인신용평점 평균,	현	
	예대금리차	<u> CB회사명을 입력</u>	행 과	
	대출금리	<u>CB사 개인신용평점별</u>	 같	
일반	기준금리		음	
신용	가산금리	예대금리치를 각각		
대출	가감조하리	입력하고, CB사 개인신용평점 평균,		
	예대금리차	<u>CB회사명을 입력</u>		
	대출금리	<u>CB사 개인신용평점별</u>		
신용 한도 대출 (마나스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예대금리치를 각각		
	가감정금기	입력하고, CB사 개인신용평점 평균,		
	예대금리차	<u>/개인신용성점 정진,</u> <u>CB회사명을 입력</u>		
	·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Ⅱ. 대출 가산금리

1. 가계대출금리 공시사항

작성 -	구분	작성	ਮੀਤ	
대	소	내용	비고	
(생략)				
분할 상환방식 주택 담보대출 (약항기 10·2·14)	(생략)	(생략)	(1) 신용등급 - 1~2등급, 3~4등급, 5~6 등급, 7~8등급, 9~10등급, 전체 평균으로 구분 - 은행 자체신용등급을 아래 표의 부도율 구간에 따라 10등급 체계로 변환	
			부도율	
			<u>신용</u> 등급 <u>주택</u> <u>신용</u> 당보 <u>(한도)</u> 대출 대출	
일시 상환방식			<u>1~2</u> <u>0.09%</u> <u>0.23%</u> 등급 <u>이하</u> <u>이하</u>	
주택 담보	(생략)	(생략)	3~4 0.09% 0.23% 출급 0.34% 조과 이하 이하	
대출			5~6 초과 초과 등급 1.80% 3.03% 이하 이하	
일반 신용 대출	(생략)	(생략)	7~8 1.80% 3.03% 조과 등급 8.41% 10.57% 이하 이하 이하 9~10 8.41% 10.57% 등급 초과 초과 (2) 가증평균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는 각각 가증평균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	
신용 한도 대출	(생략)	(생략)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마이너 스대출)			(3) 신용한도대출은 한도 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금리 및 CB사 개인신용평점을 산정	
		(생	<u> </u>	

Ⅱ. 대출 가산금리

1. 가계대출금리 공시사항

작성 -	구분	작성	비고
대	소	내용	,
	П	(현행고	가 같음)
분할 상환방식 주택 담보대출 (약정간) 10년이상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1) <u>CB사 개인신용평점</u> <u>구간</u> - 1000~951점, 950~901점, 900~851점, 850~801점, 800~751점, 700~651점, 650~601점, 600점 이하, 전체평균으로 한다
일시 성환방식 주택 담보 대출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일반 신용 대출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2)
신용 한도 대출 (마이너 스대출)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3) 한다
		(현행고	<u>한</u> 나 가 같음)

현 행	개 정 안
Ⅱ. 대출 가산금리	Ⅱ. 대출 가산금리
<작성요령>	<작성요령>
1~4. (생략) 5. 대출가산금리 공시에 대한 서식 및 공시방법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계대출금리 ① (생략) ②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 1.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10년 이상)의 신용 등급별 금리현황 및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1~4. (현행과 같음) 5
 2.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및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3.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예대금리차 2 CB사 개인신용평점별 금리현황, CB사 개인신용평점 평균, CB회사명, 예대금리차 3
5. 클런전공대물의 <u>전공공급별</u> 금리현황 및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3CD/F / 개인신용평점별 금리현황, CB사개인신용평점 평균, CB회사명,예대금리차
3-1.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의 <u>금리현황 및</u>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4.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및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3-1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u>금리현황 및 CB사별</u>	③ <u>CB</u> 사별 개인신용평점별
평균 개인신용평점은 대출취급일이	금리현황 및 예대금리차는
속하는 해당월 말일의 대출잔액	
(신용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대출금리,	
그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 대출	
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한 금리(이하 "가산금리"),	
세칙 제70조의2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부가혜택의 조건에	
해당하는 할인금리,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금리를	
모두 합산한 금리(이하 "가·감	
조정금리") 및 <u>CB사별 평균</u>	
<u>개인신용평점으</u>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예대금리차는 CB사
	 개인신용평점별 대출금리와
	정하고 있는 저축성 수신 금리
	와의 차이로 산출한다.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책서식 제12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서식일람표</u>

서 식 일 람 표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 련 규 정	제 출 처	제출기한	비고
제123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은행법 \$52 의 2 2		매월	은행연합회
	(양식)	영 §24의5②,④		<u> 20일까지</u>	홈페이지에
		규정 §89①,⑨			<u>공시</u>
		세칙§70의6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3호 서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양식)

<제123호 서식> <개정 2022.00.00.>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양식)

(단위: %,%p)

은행	<u>구분</u>	연월(YY.MM)
	저축성수신금리(A)	
	<mark>평균대출금리</mark> (B)	
	<u>가계대출금리(C)</u>	
	<u>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D)</u>	
	<u>기업대출금리(E)</u>	
	<u>예대금리차(평균)</u> (B-A)	
	<u>예대금리차(가계)</u> (C-A)	
	<u>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u> (D-A)	

- 주1) 각 구분별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식과 항목에 따라 작성
 - 2) 각 금리는 공시하는 월의 직전월 신규기준 평균금리(한국은행 산출방식에 따라 가중평균)
 - 3) 저축성수신은 정기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 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등 기타를 제외한 일반 금융채 기준)를 의미
 - 4) 평균대출금리는 금융자금대출(기업+가계+공공및기타)를 의미
 - 5)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은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보증료를 은행이 분납 후취하는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의미
 - 6) 실제 비교공시할 때의 연월은 해당 공시 연월의 금리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월의 금리도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공시